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 등에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항 포함〉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81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3.
3. 회부연월일 : 2026.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하며,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을 말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관련해 매출기준을 회피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공인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함.

이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용

• 결제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상권과의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및 제7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시 온누리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기준 회피 여부, 결제단말기 분리·공용 여부 등을 고려한 사용·결제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내용임(안 제5조제2항제8의2호 및 안 제7조제1항제7의2호).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8의2. <u>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온누리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기준 회피 여부 등, 결제단말기 분리·공용 여부 및 실질 판매자와 결제 수취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사용·결제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u>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미리 시장(「제주특별자치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 ----- ----- -----. ----- -----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② (생략)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u>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u>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 -----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 기준 회피 여부 등, 결제단말기 분리·공용 여부 및 실질 판매자와 결제수취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사용·결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u>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u>대규모점포등과</u>----- ----- ----- ----- --- ② (현행과 같음)
--	--

1)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25.9), p.8

해 일정 연매출을 기준으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예정임²⁾.

그런데 2025년 지원되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매출기준을 회피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³⁾,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가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 기준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시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기준 회피 여부, 결제단말기 분리·공용 여부 등을 고려한 사용·결제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결제 문제를 법률에 선언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204호, 2026.6.17. 시행)」 제26조의4 (가맹점의 등록)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3) 중소기업뉴스, “일부 식자재마트 품수영업... 위장가맹점 내세워 소비쿠폰 불법 결제”, 25.8.11.

합된 내용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부정 결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⁴⁾,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⁵⁾ 각각 규정 중이므로, 동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면 중복 규정의 소지가 있고,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⁶⁾은 소비패턴 변화, 기술트렌드 등 유통산업을

-
-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6)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 방안
 5.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둘러싼 중장기적인 변화를 전망하여 유통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중장기 행정계획인 점과 지역별 시행계획은 지자체가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적·탄력적으로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이 특정 분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①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을 규정하는 타법률과 중복 규정 소지, ②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의 성격, ③ 상품권 부정사용의 예방·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규모점포 운영시스템 등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본방향 및 정책에 대해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복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① 임대매장이 자체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매출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③ 악의적으로 결제단말기

를 분리 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③ SSM 가맹점은 본사의 ERP⁷⁾ 시스템과 연동되어 모든 매출이 실시간 집계되므로 개별 점주가 별도 단말기로 매출을 분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58

7) Enterprise Resource Planing(ERP, 전사적 자원관리): 조직이 회계, 조달, 프로젝트 관리, 리스크 관리, 규정 준수, 공급망 운영 등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